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(장동혁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7246

발의연월일: 2022. 9. 5.

발 의 자: 장동혁 · 구자근 · 김도읍

김학용 • 박덕흠 • 백종헌

이용호 · 이주환 · 이헌승

정찬민 · 조수진 의원

(11인)

제안이유

현행법은 농·축산업용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, 농어가목돈마련저축 및 조합 예탁금에 대한 이자소득세 비과세 등의 농업부문 조세특례 제도를 적용하고 있으나 2022년 12월 31일자로 일몰이도래하게 될 예정임.

농업부문에 대한 조세특례 축소 시 농업생산 및 농가소득 감소로 도·농간 소득격차 심화, 농촌인구 감소, 농가부채의 증가로 농촌 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됨.

이에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농·축 산업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등 2022년 12월 31일자 로 일몰이 도래하는 농업인 관련 조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자 함(안 제69조의2제1항, 제72조제1항, 제87조의 2, 제88조의5, 제89조의3, 제99조의4제1항 제105조제1항).

주요내용

- 가. 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의 일몰기한을 2022년 12월 31일 에서 2027년 12월 31일로 5년간 연장함(안 제69조의2제1항).
- 나.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2년 12월 3 1일에서 2027년 12월 31일로 5년간 연장함(안 제72조제1항).
- 다.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대한 비과세의 일몰기한을 2022년 12월 31 일에서 2027년 12월 31일로 5년간 연장함(안 제87조의2).
- 라. 조합 예탁금(출자금)에 대한 이자(배당)소득세 비과세의 일몰기한을 2022년 12월 31일에서 2027년 12월 31일로 5년간 연장함(안 제8 8조의5, 제89조의3).
- 마. 농어촌주택·고향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의 일몰 기한을 2022년 12월 31일에서 2027년 12월 31일로 5년간 연장함(안 제99조의4제1항).
- 바. 농·축산업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의 일몰기한을 2 022년 12월 31일에서 2027년 12월 31일로 5년간 연장함(안 제105조 제1항).

법률 제 호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9조의2제1항 본문 중 "2022년 12월 31일"을 "2027년 12월 31일"로 한다.

제7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"2022년 12월 31일"을 "2027년 12월 31일"로 한다.

제87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"2022년 12월 31일"을 "2027년 12월 31일"로 한다.

제88조의5 각 호 외의 부분 중 "2022년 12월 31일"을 "2027년 12월 31일"로 하고, 같은 조 제1호 중 "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"을 "2028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"로 하며, 같은 조 제2호 중 "2024년 1월 1일"을 "2029년 1월 1일"로 한다.

제89조의3제1항 중 "2022년 12월 31일"을 "2027년 12월 31일"로, "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"을 "2028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"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"2024년 1월 1일"을 "2029년 1월 1일"로 한다.

제99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"2022년 12월 31일"을 "2027년 12월 31일"로 한다.

제10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"2022년 12월 31일"을 "2027년 12월 31일"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혅 행 개 정 아 제69조의2(축사용지에 대한 양도 제69조의2(축사용지에 대한 양도 소득세의 감면) ① 축산에 사 소득세의 감면) ① -----용하는 축사와 이에 딸린 토지 (이하 이 조 및 제71조에서 "축사용지"라 한다)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축산 에 사용한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축사용지를 폐업을 위하여 2022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함 2027년 12월 31일 -----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 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 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. 다만, 해당 토지가 주거지역등 에 편입되거나 「도시개발법」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 지처분 전에 해당 축사용지 외 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,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 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

에 대하여만 양도소득세의 100 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.

② ~ ④ (생 략)

제72조(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 세 과세특례)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 인세는 2022년 12월 31일 이전 에 끝나는 사업연도까지 「법 인세법 시13조 및 같은 법 제55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법 인의 결산재무제표상 당기순이 익[법인세 등을 공제하지 아니 한 당기순이익(當期純利益)을 말한다]에 「법인세법」 제24 조에 따른 기부금(해당 법인의 수익사업과 관련된 것만 해당 한다)의 손금불산입액과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접대비(해당 법인의 수익사업과 관련된 것 만 해당한다)의 손금불산입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손금 의 계산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 여 계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에 100분의 9[해당금액이 20억원(2

② ~ ④ (현행과 같음)
제72조(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
세 과세특례) ①
<u>2027년 12월 31일</u>

016년 12월 31일 이전에 조합 법인간 합병하는 경우로서 합 병에 따라 설립되거나 합병 후 존속하는 조합법인의 합병등기 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그 다 음 사업연도에 대하여는 40억 원을 말한다)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100분의 12]의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(이 하 이 조에서 "당기순이익과 세"라 한다)한다. 다만, 해당 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당기순이익과세를 포기한 경우에는 그 이후의 사 업연도에 대하여 당기순이익과 세를 하지 아니한다.

1. ~ 8. (생략)

② ~ ⑥ (생 략)

제87조의2(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지대한 비과세) 농어민이 「농어 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2022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한 경우 해당 농어민 또는 그 상속인이 저축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가입일부터 1년 이후 다

,
1. ~ 8. (현행과 같음)
② ~ ⑥ (현행과 같음)
제87조의2(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
대한 비과세)
2027년 12월 31일

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유로 저축을 해지하여 받는 이자소득과 저축장려금에 대해서는 소득세·증여세 또는 상속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. 1. ~ 3. (생 략)

제88조의5(조합 등 출자금 등에 / 2 대한 과세특례) 농민 어민 및 그 밖에 상호 유대를 가진 거 주자를 조합원 회원 등으로 하는 금융기관에 대한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출자금으로서 1 명당 1천만원 이하의 출자금에 대한 배당소득과 그 조합원・ 회원 등이 그 금융기관으로부 터 받는 사업 이용 실적에 따 른 배당소득(이하 이 조에서 "배당소득등"이라 한다) 중 202 2년 12월 31일까지 받는 배당 소득등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며, 이후 받는 배당소득등에 대한 원천징수세 율은 「소득세법」 제129조에 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 분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고, 그 배당소득등은 같은 법 제14조

· 1. ~ 3. (현행과 같음)
제88조의5(조합 등 출자금 등에
대한 과세특례)
202
7년 12월 31일까지
<u>7인 12년 31년까지</u>

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 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.

- 1. <u>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</u> <u>12월 31일</u>까지 받는 배당소득 등: 100분의 5
- 2. <u>2024년 1월 1일</u> 이후 받는 배당소득등: 100분의 9

제89조의3(조합등예탁금에 대한 저율과세 등) ① 농민ㆍ어민 및 그 밖에 상호 유대를 가진 거주자를 조합원 회원 등으로 하는 조합 등에 대한 예탁금으 로서 가입 당시 19세 이상인 거주자가 가입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탁금(1명당 3천만원 이하의 예탁금만 해당하며, 이 하 "조합등예탁금"이라 한다)에 서 2007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하는 이자 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하고, 2 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 월 31일까지 발생하는 이자소 득에 대해서는 「소득세법」 제129조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5의 세율을 적용하며, 그 이자 소득은 「소득세법」 제14조

· 1. <u>2028년 1월 1일부터 2028년</u> 12월 31일
<u> 12 e - 01 e</u>
2. 2029년 1월 1일
제89조의3(조합등예탁금에 대한
저율과세 등) ①
2027년
 12월 31일
<u>2</u>
028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
월 31일

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 준에 합산하지 아니하며, 「지 방세법」에 따른 개인지방소득 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.

② 2024년 1월 1일 이후 조합 등예탁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 등에 대해서는 「소득세법」 제129조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9의 세율을 적용하고, 같은 법 제14조 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하며, 「지방세법」에 따른 개인지방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.

제99조의4(농어촌주택등 취득자 이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)
①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구성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(이하 이 조에서 "1세대"라한다)가 2003년 8월 1일(고향주택은 2009년 1월 1일)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(이하 이 조에서 "농어촌주택등취득기간"이라한다)중에 다음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1채의 주택(이하 이 조에서 "농어촌주택등"이라한다)을 취

	-
② <u>2029년 1월 1일</u>	
	-
제99조의4(농어촌주택등 취득자	
제99조의4(중의존구역중 취득자	
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)	
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)	-
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) ①	-
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) ①	-
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) ①	-
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) ①	-
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) ①	-
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) ①	-
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) ①	-

득(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)하여 3년 이상 보유하고 그 농어촌주택등 취 득 전에 보유하던 다른 주택 (이하 이 조에서 "일반주택"이 라 한다)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농어촌주택등을 해당 1세대 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 아 「소득세법」 제89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한다.

- 1. 2. (생략)
- ② ~ ⑧ (생 략)

제105조(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)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바에 따라 영(零)의 세율을 적용한다.이 경우 제3호 및 제3호의 2는 2023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하고,제5호 및 제6호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하다.

1. ~ 6. (생략)

② (생 략)

·.
1.•2. (현행과 같음)
② ~ ⑧ (현행과 같음)
제105조(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
<u>9</u>) ①
2027년
<u>12월 31일</u>
,
1. ~ 6. (현행과 같음)
② (현행과 같음)